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의 목적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에서 선거 운영과 관리를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다.

제2조 (조직)

임원은 첫 번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제3조 (회의)

첫 번 회의 소집은 첫 기명자가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시 소집하며 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위원은 타 위원에게 위임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4조 (후보자 등록)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자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아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등록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으로 추가등록자를 결정하고, 추가등록자도 없을 경우에는 총회규칙 제3장 8조 2항을 준용한다.
2.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는 총회 내의 이사 및 위원직을 사임하고, 총회 총무 후보자 중 총회 내의 임명직에 있는 자는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등록한다.
3.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자는 선거 공영 업무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등록금과 운영경비를 납부해야 하며, 그 액수는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
4. 임기 중 정년에 해당될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5조 (후보자 등록공고)

위원장은 등록된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자의 성명, 연령, 소속 노회, 직분, 경력과 총회 규칙에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총회 회보와 선거 홍보물 및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 (후보자 정책토론회)

140 / 총회 제반규칙집

1.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의 정책토론회를 권역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2. 시기, 횟수,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한다.

제7조 (후보자 소개)

후보자 소개는 소속 노회 총대 중 1인이 하며 그 시간은 3분으로 한다. 소개 순서는 기호 추첨하여 정한다.

제8조 (후보자 소견 발표)

각 후보자는 3분 이내의 소견 발표를 한다.

제9조 (투표지)

1. 총회장은 백색지, 부총회장 중 목사는 황색지, 장로는 분홍색지, 총무는 청색지로 한다.
2. 전 1항의 투표지 모두를 배부하고 기표하여 투표함에 같이 넣는다.

제10조 (기표소 및 투표함)

기표소는 6개소 이상, 투표함은 3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제11조 (유효 및 무효표 판정)

유효표는 원하는 후보 한 명을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것으로 하고, 무효표는 일반 조례에 준하여 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 (투·개표위원)

투·개표위원은 각 노회 서기로 하며, 서기가 총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노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개표는 본 위원회가 한다.

제13조 (검표위원)

검표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 5명을 선정하여 검표케 한다.

제14조 (투표함 관리)

투표함 관리는 본 위원회가 한다.

제15조 (당선선언)

개표 결과는 위원장이 확인, 보고한 후 총회장이 선언한다.

제16조 (투표용지 보관)

투표용지는 구별 정리하여 1년간 위원회가 별도 보관한다.

제17조 (재검표)

투개표 결과, 착오가 지적되어 재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위원회는 즉시 재검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18조 (후보자 및 유권자 규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본 위원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경고, 1~3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19조 (규제 조치)

경고 이상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회 회보에 공고한다.

제20조 (규제 사항)

본 위원회가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 1) 선거 공고 전 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향응제공
- 2)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식 및 교통 편의 제공 등
- 3) 총회, 노회, 기타 단체에 대한 이례적인 기부 행위
- 4) 본 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공청회(정책토론회) 외의 일체의 집회 방문 및 대리인 참석
- 5)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제21조(불법으로 당선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어기고 당선된 자는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 무효됨을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재판국에 회부한다.

제22조 (신고)

불법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일지라도 근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면 조사 처리해야 하고,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 (효력 발생)

본 세칙은 제83회 총회 위임에 따라 실행위원회의 인준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개정)

본 세칙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총회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 2000년 9월 제85회 총회 개정
-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